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28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원의 조성·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 준용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1.

다.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Ⅲ. 검토의견

1. 정원의 조성·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 준용

현행법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목원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원 조성을 위한 준용 규정에 ‘사업비 등의 보조’에 관한 조문(법 제22조¹⁾)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 -----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 -----, 제8 조의2 및 제22조-----.

정원의 조성은 수목원의 조성과 방법이 유사하여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하고 있음²⁾.

다만, 수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등을 조성하려는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수목원³⁾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민간 등)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는 반면,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정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조성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민간 등)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

구 분		국가보조금 ⁵⁾		지자체보조금	
		조성	운영	조성	운영
수목원	국립수목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립수목원	보조 불가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사립수목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학교수목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정원	국가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정원	보조 불가	근거없음	근거없음	근거없음
	민간정원	근거없음	보조 가능 (등록 시+보존가치)	근거없음	보조 가능 (등록 시+보존가치)
	공동체정원	보조 불가	근거없음	근거없음	근거없음
	생활정원	근거없음	근거없음	근거없음	근거없음

5) 참고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① 지방정원 조성과 ② 공동체정원 조성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한되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③ 민간정원 운영에 대하여는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보조금 지급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254. 지방정원 조성

25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60. 공동체 정원 조성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는 지방정원 등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⁶⁾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
→민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⁷⁾,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
동체정원, 생활정원의 조성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

구 분		국가보조금 ⁸⁾		지자체보조금	
		조성	운영	조성	운영
수 목 원	국립수목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립수목원	보조 불가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사립수목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학교수목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정 원	국가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정원	보조 불가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민간정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공동체정원	보조 불가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생활정원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보조 가능	보조 가능(등록 시)

6)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김선교의원 서면질의 “[산림청] 지방
정원 등 사업비 보조 필요”

○ 주요 질의내용 발췌: 현재 국가정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은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정원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비 등의 보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제18조의2에 따른 준용 규정에 같은 법 제22조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이하 생략)

7)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① 민간정원과 생활정원 조성에 관한 국가보조금의 지급 근
거와 ②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의 운영에 관한 국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8) 참고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안 제18조의2에 따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의 구성에 관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① 지방정원 구성과 ② 공동체정원 구성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참고 1 정원 현황('25.10월말 기준)

□ 국가정원 : 2개소

연번	정원명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1	순천만 국가정원	전남 순천시 오천동	2015.09.05	92.7ha
2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중구	2019.07.12	83.5ha

□ 지방정원 : 16개소

연번	정원명	소재지	등록일자	지정면적
1	세미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일원	2019.06.28	12.7ha
2	죽녹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산37-6 일원	2022.10.13.	19.5ha
3	거창창포원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31일원	2024.01.24.	42.4ha
4	영월 동서강정원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04-3 일원	2021.06.16	10.4ha
5	구절초정원	전북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926-89	2022.07.18	38ha
6	경북천년숲정원	경북 경주시 통일로 366-4번지 일원	2023.04.17	33ha
7	화개지방정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 일원	2023.04.24	11ha
8	부산 낙동강 정원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	2023.08.01	250ha
9	줄포만 노을빛정원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6-1일원	2023.10.31	31ha
10	해돋마루정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온리 7-4번지 일원	2023.11.13	34ha
11	지리산정원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22-1 일원	2024.10.10	10.89ha
12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 북구 충효동 908 일원	2024.10.30	14.09ha
13	신정호 정원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2025.01.10	23.86ha
14	좌광천 지방정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60번지 일원	2025.04.30	12.2ha
15	세천늪테마정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69번지 일원	2025.07.03	12.4ha
16	자라섬 정원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일원	2025.10.15	55.9ha

□ 민간정원 : 182개소

합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2	3	1	2	12	9	2	6	8	18	9	15	32	12	40	13

□ 공동체정원 : 0개소

□ 생활정원 : 456개소

참고2

정원 조성 절차

절차	주요 내용	비고
기본구상	■ 대상지 타당성 검토, 도입시설 내역 등 검토 ■ (절차) 기본구상	
↓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	■ (내용)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명칭 및 위치·면적, 지정기간,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기타사항 등 ■ (절차)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정원, 지방정원
↓		
국가정원 조성계획 수립 (산림청장)	■ (기준) 조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입지여건의 적정성,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절차) 주민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 조성계획 확정 → 관보 고시 * 예정지 지정 시 주민 의견수렴한 경우 조성계획 수립단계에서 생략 가능	국가정원
or		
정원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 (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적합성,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절차) 조성계획 승인신청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 조성계획 승인 → 고시	지방정원 민간정원
↓		
정원 조성	■ (절차) 실시설계 및 조성 공사	
↓		
정원 등록 (시도지사)	■ (절차) 조성 완료 후 등록 ■ (절차) 등록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등록증 교부	지방정원 민간정원